거창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안

의안 번호	2012 ~ 55

제출년월일	2012. 6. 29.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군비를 재원으로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농업보조금의 편중지원을 방지하고, 형평성을 유지하며, 자금집행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속적으로 영농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농업보조금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조)

○ 농업보조금 : 농업·농촌발전을 위해 농업경영체에 교부하는 자금
○ 농업경영체 : 농업을 영위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인단체 등
○ 보조사업자 : 농업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농업경영체
○ 보조금 총액제 : 농업경영체가 지원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총액
○ 보조금 일몰제 : 같은 보조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
○ 보조사업 사후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군수 승인 없이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는 것
○ 일반적인 보조사업, 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 공익발전 및 농정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구분하여 정의함

나. 보조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농업·농촌의 경쟁력제고와 혁신역량강화를 위한 농정시책사업
○ 농업인 및 농촌마을의 소득을 높이는 지원사업
○ 지구온난화 대비작목 및 소득작목 재배 지원사업 등

다. 보조금지원 순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신규 신청자 ⇒ 지원받은 보조금액 적은 ⇒ 친환경 영농정도 ⇒ 젊은 신청자 ⇒ 해당 분야 영농규모가 큰 신청자

라. 보조금 지원율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일반적인 보조사업은 50퍼센트 이내
○ 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은 70퍼센트 이내
○ 공익발전 및 농정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은 90퍼센트 이내

마. 보조사업의 관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농업경영체통합관리시스템으로 관리
○ 선정단계 ⇒ 실행단계 ⇒ 완료단계

바. 보조사업의 사후관리 기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 건축시설은 10년

○ 장비 및 그 밖의 시설물은 5년

○ 농기계 및 소형기계류는 통상적인 내구연한을 적용

사. 보조금 총액제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 농업인은 7천만원

○ 농업인단체는 1억5천만원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법인은 5억원

아. 보조금 일몰제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 농업인에게만 적용, 적용기간은 처음 지원받은 해부터 3년간

○ 농기계의 경우에는 해당농기계 내구연한

자. 총액제, 일몰제 적용의 예외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1조)

○ 하나의 사업이 총액제 금액 또는 일몰제 기간을 초과한 경우

○ 일몰제를 적용에서 제외된 후 3년이 경과한 경우

○ 각종 직불금 및 질병·병충해의 예방·방제사업, 종자보급·계량사업, 품종계량사업, 재해복구사업 등 불특정 다수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

차. 보조금 제제기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2조)

○ 보조금액이 5백만원 미만 : 2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보조금액이 5백만원~1천만원 미만 : 3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보조금액이 1천만원 이상 : 5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1천만원 이상 보조사업 포기로 미추진 : 2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제제기간기산일은 제제기간에 대한 적용을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통보한 날의 다음날부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과 합의되었음

다.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2.5.25. ~ 6.15.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4)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농업보조금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 및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이란 군이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군내 농업경영체에 지원하는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교부금을 말한다.
2. “농업경영체”란 농업을 영위하는 농업인(농가를 말하며, 이하 같다) 또는 농업법인, 농업인단체 등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보조금 총액제”(이하 “총액제”라 한다)란 농업경영체가 군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총액을 말한다. 이 경우 국비와 도비 보조금을 총액에 계상한다.
5. “보조금 일몰제”(이하 “일몰제”라 한다)란 농업경영체가 군으로부터 같은 보조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6. “보조사업의 사후관리”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7. “일반적인 보조사업”이란 농업경영체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택하여 이를 추진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업을 말한다.
8. “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이란 군이 농업 영역확대를 위하여 특정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실시하여 관행사업에 모범이나 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9. “공익발전 및 농정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농업정책 목표 달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조금의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사업)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농업·농촌의 경쟁력제고와 혁신역량강화를 위한 농정시책사업
2. 농업인 및 농촌마을의 소득을 높이는 지원사업
3. 지구온난화 대비작목 및 소득작목 재배 지원사업
4. 친환경 농업 장려사업
5. 농산물 가공 및 유통지원 사업
6. 가축사육 및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려사업
7. 고급육 안정생산 및 축산물 유통시설 확충사업
8. 수출농업기반시설조성사업
9. 그 밖에 군수가 지역발전과 공익목적으로 필요한 농정시책사업

제5조(보조금 지원순위) 보조금의 지원은 해당 보조금의 지원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동일한 조건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지원한다.

1. 해당 보조사업의 신규 신청자
2. 그 동안 지원받은 보조금 총액이 적은 자
3. 친환경 영농정도가 높은 자
4. 영농의욕이 높은 젊은 자
5. 해당 분야 영농규모(농지면적, 시설규모, 사육두수 등)가 큰 자

제6조(보조금 지원율) 보조금의 지원율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적인 보조사업은 50퍼센트 이내
2. 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은 70퍼센트 이내
3. 공익발전 및 농정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은 90퍼센트 이내

제7조(보조사업의 관리) ① 보조사업의 운영은 농업경영체통합관리시스템(“거창군보조금관리시스템” 및 “거창군농업소득지원사업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농업경영체통합관리시스템에 보조금사업의 운영 단계별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정단계 : 보조사업 신청내용, 평가 및 선정 사항
2. 실행단계 : 보조금 사용내역 및 현장지도·자문 사항
3. 완료단계 : 정산보고 및 성과평가 결과

제8조(보조사업의 사후관리 기간) 보조사업의 사후관리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건축시설은 10년
2. 장비 및 그밖에 시설물은 5년
3. 농기계 및 소형기계류는 통상적인 내구연한을 적용

제9조(총액제) 제8조에서 정한 보조금 사후관리 기간 동안 같은 농업경영체에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총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농업인단체 또는 농업법인이 보조사업자로서 군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소속 농업인에게 배부한 경우에는 해당 농업인에게 배부 받은 금액을 계상한다.

1. 농업인은 7천만원
2. 농업인단체는 1억5천만원
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법인은 5억원

제10조(일몰제) 일몰제는 농업인에게만 적용하며, 적용 기간은 최초 지원받은 해부터 3년간으로 하고, 농기계의 경우에는 해당농기계 내구연한으로 한다.

제11조(총액제 및 일몰제 적용의 예외) 제9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총액제와 일몰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1. 하나의 사업이 제9조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

2. 하나의 사업이 제10조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
3. 일몰제를 적용받아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다만, 보조금지원 대상으로 회복된 후에도 보조사업을 신규 또는 일몰제에 적용이 되지 않는 신청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후순위로 한다.
4. 각종 직불금 및 질병·병충해의 예방·방제사업, 종자보급·계량사업, 품종계량사업, 재해복구사업 등 불특정 다수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

제12조(보조금 제제기간) 보조사업자가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17조의 보조금 중지 및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당 보조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 : 2년
2. 해당 보조금액이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인 경우 : 3년
3. 해당 보조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 4년
4. 보조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사업을 포기로 추진하지 않은 경우 : 2년
5. 보조금 제제기간 기산일은 제제기간에 대한 적용을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통보한 날의 다음날부터 한다.

제13조(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적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비용추계 제외 대상임

4. 작성자

농업기술센터소장 임 영 만